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 일시	2022. 3. 28(월) 총 7매(본문7)	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서정관, 사무관 위성화, 김보람, 안일찬 • ☎ (044) 201-3584, 3574, 3562
	건설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근오, 사무관 정채균 • ☎ (044) 201-4582
보 도 일 시			2022년 3월 2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28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국토부, '22.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「부실시공 근절 방안」 발표

◈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**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**이 내려질 수 있도록 **관할관청에 처분 요청**

◈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**중대 부실시공 사고**는 **국토부 직권 처분** 추진(건산법 시행령 개정)

◈ **시공 품질 관리 강화**, **감리 내실화**, **부실시공 엄정 대응**을 위한 「**부실시공 근절 방안**」 19개 과제 마련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: 노형욱)는 지난 1월 11일 **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**에서 발생한 **붕괴사고***와 관련하여,

*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·배관층(PIT층)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·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(사망 6명, 부상 1명)

○ **건설사고조사위원회**(1.12~3.12, 이하 '사조위')의 조사 결과*를 바탕으로 **시공사·감리자**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**관할관청**에 관계 법령에 따른 **엄중한 처분을 요청**하는 한편,

*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, 콘크리트 품질 부실, 감리 부실 등

○ **사조위** 및 **전문가 의견수렴**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「**부실시공 근절 방안**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.

1. 시공사 · 감리자 처분 요청

□ 먼저, 이번 **사고 현장**의 **시공사**에 대하여는,

○ 현행 **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**는 고의나 과실로 **부실하게 시공**하여 **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**에 **중대한 손괴**를 일으켜 **공중의 위험**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**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**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,

○ **이번 사고의 원인**과 **그 피해 규모**를 볼 때, 원도급사인 **현대산업개발**과 하도급사인 **가현건설산업**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,

○ 이번 **사고의 중대성**과 **국민적 우려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**가장 엄중한 처분**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**서울시**(원도급사)**와 광주시 서구청**(하도급사)에 **각각 요청**하였다.

□ 감리자인 **건축사사무소광장**에는 **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**에 따라 **영업정지 1년**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였다.

< 관계법령상 처분 규정 >

처분대상/소재지		처분권자	관련규정
1. 시공업체			
현대산업개발 (원도급)	서울	서울 특별시장	■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제10호,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2호라목 3) (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)
		광주시 서구청장	■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8 제5호가목 2), 10),11),18) (벌점 12점)
가현건설산업 (하도급)	광주 (서구)	광주시 서구청장	■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제10호,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2호라목 3) (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)
			■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8 제5호가목 2), 10),11),18) (벌점 12점)
2. 감리업체			
건축사사무소 광장 (감리)	경기	경기도지사	■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31조제1항제8호 (영업정지 1년)
		광주시 서구청장	■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제5호나목 1), 7), 15) (벌점 7점)

* 다만,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벌점은 부과하지 않음

□ 아울러,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·건축법 등에 따른 **형사처벌**(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)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관계기관과 협의**하여 **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**할 예정이다.

2.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내용

□ 국토부는 금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·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**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**하고 **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**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.

○ 우선,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**교육**과 **홍보·캠페인**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,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 위해 **불법행위**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**제재 조치**를 취한다.

○ 또한,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**안전 투자**를 적극 확대하고,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**스마트 건설 기술**의 개발·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.

○ **건설 주체**의 권한에 상응하는 **안전 책임 강화**와 **사고 취약요인**에 대한 **맞춤형 안전 관리**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.

□ 한편, 이번에 발표한 「**부실시공 근절 방안**」은 사조위가 규명한 **직접적인 사고 원인**과 함께 **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**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.

○ 이번 사고는 **정부·인허가관청**의 **현장 관리·감독 어려움**, **발주자·시공사**의 **안전 책임 소홀**, **감리**의 **독립성·책임성·전문성 부족**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,

○ 이를 해결하기 위해 [1]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**시공 품질 관리 강화**, [2]**감리 내실화**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, [3]부실시공에 **무관용 원칙 대응**의 **3대 분야 19개 과제**를 마련하였다.

1 첫째,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.

○ (**표준시방서 고도화**)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**표준시방서 활용**을 **민간공사**까지 확대하고,

-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**한중**(寒中) **콘크리트**, **거푸집·동바리 해체** 등에 대한 **표준시방서 구체화***한다.

*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(4℃ 이하)의 구체적 기준,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

○ (**시공 이력 관리**) **시공사**가 설계 변경, 가시설 해체 등 **주요 과정**을 **기록**하여 **감리에게 제출**토록 의무화한다.

- 이 때 **원도급사, 하도급사, 현장 작업자** 등 관계자가 각각 **의견을 기재·서명**토록 하고, **감리자**는 제출 내용을 **검토·확인**해야 한다.

○ (**레미콘 관리**) **생산 과정**에서부터 레미콘 **품질**을 **관리**하기 위해 공장 **시스템 인증제**를 **도입**하는 한편, 레미콘 현장 반입 시 **현장과 동일 조건**에서 양생한 공시체(供試體)로 **추가 시험**을 실시한다.

○ (**품질관리자 관리**) **실제 품질 관리 경력**(특급 3년, 고급 2년, 중급 1년)이 있는 기술인이 **품질관리자로 배치**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-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**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**하고, **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**에 대해서도 **제재 규정**을 마련한다.

*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, 업무 지시자(현장대리인)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○ (**적정 공기·비용 확보**) **발주자**에게 **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**을 **의무화**하고, **인허가 단계**에서 **관계기관**(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, 지역건축안전센터 등)가 **적정성을 검토**토록 한다.

○ (**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**) 장비 임대차 계약 시 **장비업체가 제공**하는 **근로자**에 대해서는 **시공사**가 **직접 근로계약을 체결**토록 하고,

-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**장비 임대차 계약**은 **표준계약서***를 활용하여 **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**을 체결토록 한다.

* 표준계약서 미사용은 일정 조건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, 계약 방식을 공사대장에 기재

2 둘째,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.

○ (공사중지 실효성 확보) 감리권 보장을 위해 **공사중지권** 행사로 인한 **발주자·시공사 손해**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**고의·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**하고,

- 주요 구조부 결함 등 **중대 위험**에는 **공사중지 명령**을 **의무화**한다.

○ (지자체 권한 강화) **민간 주택공사**에서 **인허가관청**에게 **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**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
- 또한, 지자체가 관리·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**지역건축안전센터**도 **단계적으로 확대**(66개소 → 130개소)한다.

○ (전문기관 안전 관리) **국토안전관리원**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**점검·지도**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, **고위험 현장**(예시 : 1·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*)부터 **우선 점검**한다.

* 관리원이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민간 1·2종 시설물 현장은 전국 약 900개소

- 또한, 도심 고층 건축 등 **고위험 건설현장**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**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·장비도 확충**하고,

-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**안전 관리 활동**을 **민간 공사까지 확대**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**전담기관으로 육성**하기 위해 노력한다.

* 설계 안전성 검토(설계), 안전 컨설팅(시공), 안전관리 수준 평가(준공) 등

○ (감리 교육 강화) **설계·시공·품질관리** 분야의 **종합적인 역량이 요구**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**관련 전문교육도 강화**한다.

* 감리 수행 중 매년 전문교육(7시간) 이수 의무화, 교육 평가 기준 상향(60→70점) 등

○ (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) **주택공사**에도 **공공공사**에 준하여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**배치 기준**을 마련토록 하고, 이에 대한 **국토부 승인 절차**를 신설한다.

* 감리 업무 내용 및 공사기간·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 마련(공공공사 기준 준용)

3 셋째,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.

○ (국토부 직권 처분) 금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**심각한 인명 피해**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**국토부로 환원**하여 **직권 처분**한다.

*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(❶사망자 3명 이상 또는 ❷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❸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 필요)되는 사고

- 현재 **지자체**는 **대부분 형사판결 결과** 등을 바탕으로 **위법성을 최종 판단**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,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**처분 기간**도 **크게 단축**시킬 예정이다.

○ (원·투 스트라이크 아웃)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**부실시공**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**원·투 스트라이크 아웃제**를 도입한다.

*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는 국토부 직권 처분, 이외는 지자체 처분

- **시설물 중대 손괴**로 **일반인 3명** 또는 **근로자 5명 이상** 사망 시에는 바로 **등록말소**하는 **원스트라이크 아웃**과 함께 **5년간 부실시공 2회** 적발 시 **등록말소**하는 **투스트라이크 아웃**을 도입한다.

* 불법하도급 원·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위한 건산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('21.9 발의)

○ (징벌적 손해배상)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**손해배상책임**을 **확대**(최대 3배 이내)한다.

○ (공적지원 제한) **공공택지 공급, 주택도시기금 지원, 보증기관 보증 제공** 등 공적 지원에 **엄격한 페널티**도 부여한다.

*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,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(영업정지 기간 불포함)

○ (공공공사 참여 제한) **부실시공 유발 업체**는 공공공사의 **하도급 참여**를 **제한**(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)하고,

- **상호협력평가** 시 부실시공에 대한 **감점을 확대**(2~10점 → 4~12점)하여 공공공사 **원도급 입찰**에서도 **페널티**를 **부과**한다.

* 공공공사 입찰(PQ 등)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에 1년간 가점 부여 중

□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**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**하고, **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**하는 한편,

○ 하위법령의 경우 **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**할 계획이며,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.

○ 특히, **중대 부실시공 사고**에 대한 **국토부 직권 처분**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**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**하고, 금일부터 바로 **입법예고**(3.29~5.9)를 시작한다.

□ **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**은 "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**건설 안전 강화**에 **모든 역량을 집중**하겠다"고 밝혔다.

※ 대책의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별첨 자료 : 「부실시공 근절 방안」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위성화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